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조정실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26.2.5)으로 동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기관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주체가 국무총리로 격상됨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을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행관리위원회 및 이행관리실무위원회 신설(영 제3, 4조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수립·조정, 이행상황의 점검·관리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관계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와 이행관리위원회 안전의 사전 협의·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를 설치함.

나. 이행관리단 신설(영 제5조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3조제5항에서 정하는 진

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을 설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생략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없음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44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이행 방향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권고사항”이란 「과거사정리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에 대하여 이행을 권고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이행관리위원회) ①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이행 상황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③ 위원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처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권고사항 이행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이행관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의 위원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5조(이행관리단)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이하 “이행관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이행관리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이행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단장은 이행관리단에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⑤ 이행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관리) ① 「과거사정

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소관 권고사항을 이행한 날부터 20일 이내

2.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소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위원장은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에 대한 효율적 점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3. 그 밖에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관 국가기관의 개선·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기관에 대해 이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소관 국가기관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 국가기관과 협의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

야 한다.

1.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3. 그 밖에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⑤ 위원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을 진실화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점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료 제출 및 협조) 위원장은 이행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계기관의 장은 과거사 관련 기록물 및 집행 사업 현황 등 이행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단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9조(여론 수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및 연구의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

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이행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단장이 된다.”를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로 한다.②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

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를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로 한다.③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를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로 한다.④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를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방향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관리 등 권고사항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후속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이 영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44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이행 방향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① <u>이 영에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권고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권고사항”이란 「과거사정리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에 대하여 이행을 권고한 사항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u>제5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건의 또는 요청과 같은 법 제5조의4 또는 같은 법 제5조의5에 따른 권고</u> <u>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권고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항</u> <u>4. 그 밖에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권고 등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그 이행상황의 점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의결하여 정하는 사항</u> <u>② 이 영에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란 과거사의 진상규명과 국가공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보상 등을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위원회(이 영 시행 당시 폐지되었거나 이 영 시행 후 폐지되는 위원회 중 존립 당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을 의결한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u>	
<u>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u>	<u>제3조(이행관리위원회) ①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화해를위</u>

현행	개정안
<u>등 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권고의 이행계획, 이행상황의 점검·관리와 그 밖에 권고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거사 관련 건의 등의 이행상황 점검·관리와 그 밖에 권고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 3.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이하 “폐지·종료 위원회”라 한다)가 피고 등이 되는 재송과 관련된 사항 3의2. 폐지·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거사 관련 권고 등에 대한 정부 처리대책, 폐지·종료 위원회 업무 후속 조치의 총괄·조정을 위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과 권고사항	<u>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1.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이행 상황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현행	개정안
<u>또는 폐지·종료 위원회 업무 후속 조치의 이행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u> ③ ~ ⑥ (생략)	<u>③ 위원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u> ④ ~ ⑦ (현행 ③~⑥과 같음)
<u>제4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u> <u>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u>	<u>제4조(이행관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u>

현행	개정안
<u>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과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u> ③ <u>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참석·발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u>	③ <u>실무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의 위원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u>
제5조(지원단) ① <u>위원회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u> 1.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주4	제5조(이행관리단) ① <u>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이하 “이행관리단”이라 한다)을 둔다.</u>

현행	개정안
<u>·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u> <u>3.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u> <u>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u> <u>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u> <u>② 지원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지원단에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u> <u>④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u>	<u>② 이행관리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u> <u>③ 단장은 이행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u> <u>④ 단장은 이행관리단에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u>

현행	개정안
<u>독한다.</u> ⑤ <u>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u>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u> 2. <u>행정안전부장관의 명에 따른 권고사항 또는 폐지·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 등의 이행상황 점검</u> 3. <u>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 및 지원</u> 3의2. <u>제1항 각 호에 따른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u> 4. <u>폐지·종료 위원회가 피고 등이 되는 재송에서의 소송업무 수행</u> 5. <u>그 밖에 현장 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등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이행 및 폐지·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 지원에 필요한 업무</u>	<u>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u> ⑤ <u>이행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u>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2. <u>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u> 3. <u>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u>

현행	개정안
제6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관리) ①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사유서를 <u>행정안전부장관</u>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2호 (생략) ② <u>행정안전부장관</u>은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에 대한 효율적 점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 2호 (생략) 3. 그 밖에 <u>과거사정리법</u> 제4조제1항에 따른 <u>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u>(이하 “<u>진실화해위원회</u>”라 한다)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u>행정안전부장관</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관리) ① 「<u>과거사정리법</u>」----- ----- <u>위원장</u> -----. 1 ~ 2호 (현행과 같음) ② <u>위원장</u>----- ----- -----. 1 ~ 2호 (현행과 같음) 3. ----- <u>진실화해위원회</u>----- ----- <u>위원장</u> --.

현행	개정안
③ <u>행정안전부장관</u>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관 국가기관의 개선·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기관에 대해 이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④ <u>행정안전부장관</u>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소관 국가기관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 국가기관과 협의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 3호 (생략) ⑤ <u>행정안전부장관</u>은 매년 1월 말까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을 진실화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실화해위원회	③ <u>위원장은</u>-----. ④ <u>위원장은</u>-----. 1 ~ 3호 (현행과 같음) ⑤ <u>위원장은</u> -----. ⑥ ----- <u>위원장이</u> --.

현 행	개 정 안
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 기관의 이행상황 점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u>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u>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u>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u> ② <u>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권고사항 또는 폐지·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u>	제7조(자료 제출 및 협조) <u>위원장은 이행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계기관의 장은 과거사 관련 기록물 및 집행 사업 현황 등 이행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u>
<신 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이행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	
연 락 처	(044) 200 - 2095